



대한당뇨병학회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우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4호
101-2104,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04146, Korea
TEL (02)714-9064 / FAX (02)714-9084 / E.mail: diabetes@kams.or.kr / Homepage: www.diabetes.or.kr

문서번호 대당학 제2026-248호
시행일자 2026. 8. 3.
수 신 회원 제위
제 목 2026년도 제23회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갱신 신청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 23 회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증 갱신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 하오니 **갱신 대상자(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인정증 취득 및 갱신)**께서는 갱신 서류를 **9월 2 일(수)**까지 본 학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별첨 1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사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3. 실물 평점카드가 발행되지 않은 행사에 대한 증빙은 대한당뇨병학회 전문가 홈페이지 [회원공간-행사참석조회]에서 조회되는 내역 사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회 또는 기타 기관에서 개최한 행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 필요)
4.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규정은 당뇨병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iabetes.or.kr/pro/about/rule_02.php?con=5)

- 다 음 -

-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증 갱신신청 일정
 1. **갱신서류 접수마감: 2026년 9월 2일(수)**
 2. 합격자 발표: 2026년 11월 6일(금)
 3. 갱신료 납부: 합격자 발표 시 대상자 개별공지
- 제출서류
 1.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2. 별첨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인정증 발급용 사진 여유분 1매 추가 제출)
 3. 별첨 2호 서식에 의한 교육경력 보고서
 4. 별첨 3호 서식에 의한 평점기록지(평점카드 사본 또는 증빙서류 함께 제출)
 5. 별첨 4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팀원 확인서
 6. 별첨 5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계획서(해당 시)
 7. 별첨 6호 서식에 의한 평점 및 교육시간 요약내역서 1부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첨부: 당뇨병 교육자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1부.
당뇨병 교육자 자격갱신 신청서류 1부. 끝.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김철
이사장 김성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당뇨병 교육자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중

제2조 (자격)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갱신 자격자는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5년 동안 당뇨병 실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②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에 2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또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ICDM에 2회 이상 참가자(단, 학술대회는 본회 개최에 한한다.)
- ③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평점과 당뇨병 교육시간을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 100점 이상 취득**한 자.
- ④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갱신신청자에 대하여 갱신인정증을 교부하며, 회원자격이 유지 안 될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자격박탈 이후 1년 이내 회원의 자격을 재획득하는 경우 위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교육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인정증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의무를 면제한다. (단, **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1. 만50세 이상의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2.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
 3.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이사 이상,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이사 이상, 대한당뇨병교육사회복지사 연구회 이사 이상의 임원진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
 4. 대한당뇨병학회 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갱신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별도의 고시일까지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사본
2.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3. 별첨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4. 별첨 2호 서식에 의한 교육경력 보고서
5. 별첨 3호 서식에 의한 평점기록지(평점카드 사본 포함)
6. 별첨 4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팀원 확인서(해당 시)
7. 별첨 5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계획서(해당 시)
8. 별첨 6호 서식에 의한 평점 및 교육시간 요약내역서 1부
9. 사진 3매(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는 갱신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격갱신에 응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3년간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